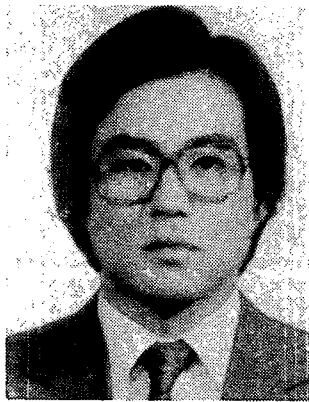


大量露出型 事故



李 相 敦

〈中央大 法大 助教授·法博〉



몇달전 TV등 보도매체에 의하여 소개된 不良 간장과 고추장의 實相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不良食品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 해결은 매우 진전이 느린 것 같으며, 그러한 이유로 外製 간장과 外製 고추장의 수입마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바로 얼마전에는 外製 포도주에 有害物質이 있다고 하여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有害物質이 포함된 食品이 수거되는 것은 美國이나 西유럽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캘리포니아産 수박에 유해한 農藥이 살포되었다 하여서 수퍼·마켓에 나와 있는 수박까지도 州政府가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였던 일, 어떤 회사의 밀가루와 핫·케익 가루가 역시 有害한 藥劑에 노출되었다는 연방정부기관 (FDA)의 판단에 따라서 全 美國에서 收去되어 폐기된 일 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경우는 다르더라도 1982년 가을에 감기약 “타이레놀” 캡슐에 毒藥을 삼입하여 몇사람을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 製造會社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損害를 감수하고서 全製品을 收去하여 폐기하였다.

또한 自動車의 王國이라는 美國에서 어떤 特定한 自動車 모델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그 車種이 모두 召喚 (Recall)되어 수리를 받게하는 일은 일년에도 몇번씩이나 있다. 이런 일은 自動車 會社의 自體的 判斷에 의할 수도 있고 聯邦政府機關의 命令에 의하는 수도 있다. 大衆生産에 의한 大量消費라는 現代生活의 패턴은 모든 製品의 製造자에 실로 엄격한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에 관하여 政府當局은 선량한 消費者 大衆인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製造者에 대한 規制와 監督을 한시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와같은 事例는 어떠한 製品의 有害하다는 것이 쉽게 밝혀진 경우이다. 그러나, 人間の 科學



의 知識은 생각보다는 未盡한 데가 많이 있어서 어떠한 物質이나 製品이 위험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실로 많은 사람들이 各種의 危險에 大量的으로 露出되어서 엄청난 慘事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통칭하여 大量露出型 事故 (Massive Exposure Accident)라고 하며,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하기 위한 不法行爲 訴訟은 이미 美國의 法曹界와 法學界에 실로 큰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다. 대표적인 大量露出型 事故를 들면 다음과 같다.

單一한 製品이 초래한 최대의 災害는 石棉(Asbestos)에 의한 것이다. 1940년 이래 美國에서만 石棉에 노출된 근로자가 1,300만명, 그리고 일반인이 1,400만명인데 그중 1983년을 기준으로 연간 8,500명이 각종 질병(肺癌 등 각종 癌, 石棉肺症 등)으로 死亡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연간 10,000명이 사망할 것이며 2027년까지 약 42만명이 死亡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推算도 가장 온건한 것이고 어떤 견해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에 160만~210만명의 美國인이 各種 石棉疾病으로 자기 壽命을 못채우고 死亡할 것이라 한다. 死亡者, 遺家族 그리고 被害者에 의한 損害賠償訴訟이 2만건 이상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全 石棉業界는 破産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실 最大의 石棉製造會社인 Johns-Manville社는 1982년에 聯邦破産法에 의하여 會社再組織을 신청하여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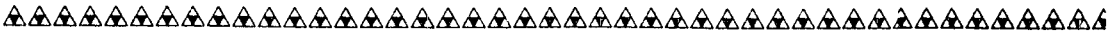
越南戰에서 除草劑로 散布되었던 “Agent Orange”에 노출된 美軍兵士들은 제대 후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렸는데 이는 “Agent Orange”에 포함되었던 Dioxin 때문임이 밝혀졌고 수년간의 訴訟 끝에 결국 製造會社인 Dow Chemicals社가 피해자에 1억 8천만弗을 지불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한 동안은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醫藥品이 한참후에 有害한 것으로 밝혀져서 큰 참화를 초래하는 경우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어서 醫藥品의 製造許可에 政府當局이 보다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DES(Diethylstilbestrol)은 流産을 예방하기 위하여 產母에게 투입되었던 에스트로젠 타입의 合成物質로 1947년에 FDA의 승인을 얻어 數個의 製藥會社에 의하여 제조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 FDA가 使用禁止處分을 내리기까지 생산되어 處方醫藥品으로 사용되었다. FDA가 제조를 금지시킨 것은 DES를 투입한 產母가 出産한 딸이 약 20년이 지난후 癌을 유발하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약, 1,000명의 피해자가 製造會社들을 상대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제기하였고 法院은 製造會社의 有責을 인정, 막대한 賠償을 命하였다.

IUD(Intrauterine Birth Control Device)는 A.H.Robins社가 개발하여 “Dalkon Shield”란 상품명으로 시판하였던 女性用 體內 삽입 피임기구인데 1971년 이후 美國內에서만 280만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450만개가 판매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IUD는 자궁내의 감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최소한 20명의 女性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자 12,000件 이상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이 제기되었다. 총 請求額은 무려 10억弗에 달하자 A.H.Robins社는 聯邦破産法에 의거하여 會社再組織을 申請하였다. 이로써 A.H.Robins社는 Johns-Manville社에 이어서 製造物 責任으로 인하여 破産節次를 밟게 된 두번째의 大企業이 되었다.

임신 초기의 임신부의 구토증(이른바 입덧: Morning Sickness)을 경감시키는데 많이 쓰였던 “Bendectin”이 기형아를 出産시키는 原因이 됨을 알게된 것도 최근이다. “Bendectin”의 製조회사인 Merril Dow社 (Dow Chemical社의 子會社)는 1억 2천만弗의 賠償基金을 設定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이에 의한 賠償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시 訴訟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Bendectin”은 물론 미국내에서는 사용금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病院들은 아직도 “Bendectin”을 초기 임신부에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i Lilly社의 關節炎用 진통제 “Oraflex” 事件은 製藥會社의 倫理 문제를 제기시킨 것이기도 하다. Lilly社는 “Oraflex”를 개발하여 1980년부터 英國 등 9개국에서 먼저 시판하였고 美國內에서는 1982년 4월에 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하였다. 그러나 불과 4개월만에 FDA는 “Oraflex”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美國內에서만 최소한 26명이, 그리고 英國 등을 포함해서는 100명이상이 이 약품의 副作用으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聯邦法務省은 Lilly社가 英國 등에서 판매된 “Oraflex”가 이미 심각한 不作用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고도 FDA에 시판신청을 할때 이를 告知하지 않았다고 하여 刑事訴追를 하였고 Lilly社는 有罪를 認定, 2만 5천弗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Lilly社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였다.

이상은 모두 外國, 특히 주로 美國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常識적으로 판단하여도 우리 주위에는 石棉製品이 散在하여 있고, “Bendectin”도 처방·조제되고 있다. 무슨 약이든 藥局에서 간단하게 구매될 수 있는 우리의 처지인데도 우리나라의 製藥會社가 아직 製造物責任으로 과산하였다는 소식은 들어본 일이 없다. 이를 두고서 우리나라 사람의 體質이 西洋사람보다 월등히 강인하다거나, 또는 우리의 製造技術이 월등히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原因은 다 른데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 美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石棉·질병은 그 잠복기가 15~40년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질병이 나타날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一般大衆의 權利意識의 결여를 또 하나의 原因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와 保社當局의 능력은 美國의 FDA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미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단체의 능력과 지식은 아직 너무나 유치하며 公益法律家 집단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한 原因일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현행 法條系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消費者에게 모든 立證責任을 지우기 때문에 訴訟에서 勝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독자적이고 양심적인 專門家들의 역할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의 능력은 限界가 있고 一般消費者는 無知하고 無力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專門家들이 연구자금을 企業에 의존한다면 公正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大量露出型 事故는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모든 智慧를 모아서 이에 대비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의 豫防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모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이웃끼리 나눈온정 밝아오는 우리사회